

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일시	2020. 12. 25.(금) / 총 4매(본문3, 참고1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	담당자	- 과장 김배성, 사무관 박병철, 주무관 이장빈 ☎ (044) 201-3998, 4005	
	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		- 과장 박종일, 사무관 김관오 ☎ (044) 202-7726	
	고용노동부 산업보상정책과		- 과장 오태웅, 서기관 김용주, 주무관 성여선 ☎ (044) 202-7712, 7705	
	경찰청 교통안전과		- 과장 한창훈, 경정 김주곤, 경위 김형주 ☎ (02) 3150-2152, 2852	
보 도 일 시		2020년 12월 28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7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

- 사업주의 종사자 보호 위한 법적 준수사항·권고사항 명시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,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 및 경찰청(청장 김창룡)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「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」(이하 “가이드라인”)을 마련하여 12월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,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)에 공고한다고 밝혔다.

□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되고, 코로나-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,

- 이에 따라,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

* '20년 1~6월 기준,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.2% 증가하였으며,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.7% 증가

□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·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 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.

□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

-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,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.(산업안전보건법)
- 또한,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·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.(산업재해보상보험법)
- 아울러,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·감독해야 하며,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 또한 함께 처벌받는다.(도로교통법)

②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

-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.
- 코로나-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배달앱 온라인 선결제를 할 경우 ‘(가칭)비대면 안전 배달’ 항목을 신설하여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한다.

-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,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한다.
 -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,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한다.
-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“주요 배달 플랫폼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, 중소·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”면서,
- “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 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시기를 바라며,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”고 당부했다.

참고

「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」 주요내용

구 분	중개사업자(플랫폼 등)	사업주(직접고용)
법적 준수사항	▶ 프로그램 등록 시 이륜차 운행 면허 및 안전모 보유여부 확인 ▶ 프로그램을 통한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사항 정기 고지 ▶ 업무 수행시간을 산업재해를 유발할 정도로 제한 금지	▶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▶ 보호구 지급·착용 지시 및 관리 ▶ 고객응대 매뉴얼 마련·교육 등 대면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▶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▶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이륜차 탑승 제한조치
권고사항	▶ 보호구 미착용 또는 교통법규 위반 적발 시 프로그램 사용제한 기능 설정 ▶ 최초 등록 시 교육 이수여부를 등록토록 프로그램 관리 ▶ 교육 미 이수자 대상 일정기간 프로그램 사용제한 설정 ▶ 교통사고 다발지역 접근 시 알람 기능 설정 ▶ 이륜차 정기 안전점검, 안전운행 관련사항 공지 ▶ 기상악화 시 사전 안내기능 설정 ▶ 휴식 안내 메시지 송출	▶ 배달지역 급커브 구역 등 지리적 특성과 노면상태에 따른 안전운행 방법 및 운행습관 관리·교육 ▶ 업무 수행시간을 산업재해를 유발할 정도로 제한 금지 ▶ 이륜차 운행 전, 각부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일상점검 실시 ▶ 날씨에 따른 운행 시 주의사항, 위험요인, 감속기준 등을 안내하고, 필요 시 운행 제한